

2 지방세외수입 지원

문 의

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(☎ 044-205-3877)

충청북도 세정담당관 (☎ 043-220-2763)

❖ **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·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.**

● 지원대상

- (개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직·간접 피해자

* 예: 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● 지원내용

- (지방행정제재·부과금)
 - 지원근거 :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~16조
 - 지원내용 : 체납처분 유예(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)
 - ※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: 개별법령에서 체납절차에 대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(구 지방세외수입법)을 준용하고 있는 세목
- (과태료)
 - 지원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~4
 - 지원내용 : 납부기한 연장, 분할납부
- (그 외 부과금) ※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, 과태료가 아닌 지방세외수입 중 지원근거가 있는 지방세외수입
 - 지원근거 : 개별법령(지원근거 있는 개별법 참조)
 - 지원내용 : 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, 분할납부 등

● 신청접수

- 과태료·임대료·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 부서 문의